



특허청

희망의 새시대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지식재산부국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박형식 서기관 김신용	042-481-5846
	2015년 3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19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참신하고 우수한 판례평석 찾습니다!

- 특허심판원,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오는 3월 20일(금)부터 7개월간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을 공모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판의 품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써 특허심판원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한다.

이번 판례평석 공모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는 자유과제부문과 최근 이슈가 된 판례 중 특허심판원에서 제시한 지정과제부문으로 공모한다.

올해의 지정과제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인정 시점에 대한 상표판례(2011후3698)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관련 특허판례(2011후927)이다.

응모는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 선정은 판례평석평가단에서 1차적으로 등급별 평가 및 항목별 세부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 수상작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을, 우수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을, 장려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십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수 이상의 수상작에 대하여 특허청 내부 응모자와 외부 응모자를 분리하여 시상함으로써, 로스쿨 학생 등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우수한 판례평석은 심판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특히 “올해는 외부응모자에게 수상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변리사, 로스쿨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9월 20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lss0125@korea.kr)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요강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요강

1. 추진 목적

-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특허청 내부 및 외부의 의견 청취
-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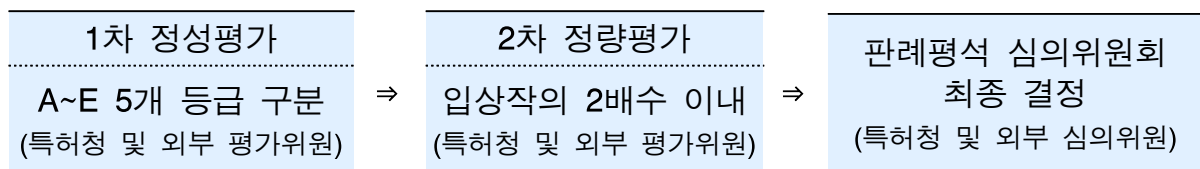
2. 공모과제 및 공모기간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 ① 상표분야(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판결)
 - 등록상표의 식별력 인정시점 관련 판례
 - ② 특허분야(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의 청구 범위 해석 관련 판례
- 공모기간 : '15. 3. 20. ~ 9. 20.(7개월간)

3. 응모자격

- 변리사, 로스쿨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능

4. 평가·심의 절차



5. 시상내역

- 최우수(1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 우 수(2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장 려(3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50만원
- 입 선(10명)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 선정, 입선은 '2차 평가'를 통과한 응모자에 한함

6. 주요 일정

주요 내용	일 정
판례 평석 공모	3. 20. ~ 9. 20.
1·2차 평가	9. 21. ~ 11. 30.
판례평석 심의위원회 심의	
발표 및 시상	12월초

7. 제출서류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단, 특허청 직원은 이력서 제출 필요 없음)
- 판례 평석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판례 평석 내용(별지 제3호 서식) 1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공지사항 확인

< 판례평석 작성요령(별지3호 서식) >

1. 아래 한글로 작성. 용지여백을 위쪽 15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로 설정
2. 제목은 휴먼명조 18포인트로 작성하고, 제목 아래에 휴먼명조 13포인트로 대상판결 번호를 기재
3. 목차는 중고딕 11포인트, 줄간격 180%로 제목 아래에 2단으로 작성
4. 본문 항목은 중고딕 볼드체 14포인트로 작성하며 구분은 '1, 2, 3', '가, 나, 다', '(1), (2), (3)', '(가), (나), (다)'의 순으로 표기
5. 본문은 목차 하단에 이어서 작성.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기재하며,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200%로 설정
6. 참고사항은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되 각주로 처리

8. 서류 응모 및 문의

- 응모마감 : 2015. 9. 20.(일)
- 응모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전자메일 주소: lss0125@korea.kr)
* (전자메일 제목) 2015년 판례평석 공모_소속_홍길동
- 문 의 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ss0125@korea.kr)

9. 유의사항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감
- 응모된 판례 평석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는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상기준에 맞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이력서 양식

사 진 (3.5cm×4.5cm) <u>이미지 스캔하여 붙여넣기 할 것</u>		이 력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소								
		전화번호		주택 또는 직장)			휴대폰)			
		이메일								
학력	기간		학교명(대학교 이상)			전공		학위		
경력	기간		근무처(부서)			직위(급)		업무내용		
자격사항	취득년월일		자격·면허증			시행처(등록번호)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판례평석 요약서

		접수번호:
판례번호	※ 관련 판결문·심결문의 사건 번호를 기재 - 예시 :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제 목	※ 판례평석 제목을 기재	
요 약	※ 판례평석 본문을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필요성	※ 대상판례의 중요성·문제점을 바탕으로 평석의 필요성을 기재	
독창성	※ 판례 평석의 내용이 기존의 판례 평석 또는 논문과 대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 기재	
파급효과	※ 판례 평석의 내용이 심사심판의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판례평석 양식

— < 판례평석 작성요령 > —

1. 아래 한글로 작성. 용지여백을 위쪽 15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로 설정
2. 제목은 휴먼명조 18포인트로 작성하고, 제목 아래에 휴먼명조 13포인트로 대상 판결 번호를 기재
3. 목차는 중고딕 11포인트, 줄간격 180%로 제목 아래에 2단으로 작성
4. 본문 항목은 중고딕 볼드체 14포인트로 작성하며 구분은 ‘1, 2, 3’, ‘가, 나, 다’, ‘(1), (2), (3)’, ‘(가), (나), (다)’의 순으로 표기
5. 본문은 목차 하단에 이어서 작성.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기재하며,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200%로 설정
6. 참고사항은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되 각주로 처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특징을 통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향상 방안

<특허법원 2009.10.9. 선고 2009허3732 판결>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이 건 판례에 대한 고찰 |
|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 가. 원심결의 취지 |
| 가. 사건의 배경 | 나. 이 건 판결의 취지 |
| 나. 원심결(2008당3145)의 요지 | 5. 본 사안에 대한 검토 |
| 다. 이 사건 판결의 요지 | 가. 소송경제 관점 |
|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 고찰 | 나. 법적 안정성 관점 |
| 가. 특허심판의 법적성질 | 6.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 방안 |
| 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결 론 |

1. 서 론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절차이다. <중략>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이 사건 특허발명

본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 건 분쟁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특허발명¹⁾은 과일포장구로서, 추석 과일선물세트에서.... <중략>

7. 결 론

1) 특허출원번호는 10-1993-0023890이다.